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97호 2025. 6. 16. (월)

고시 · 공고

- 용해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2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9
-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0
-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
-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20
-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25
-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 27
-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2
- 목포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 37
-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44
-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63
-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 66
-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 68
- 목포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73
-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 ----- 75
- 목포시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 89
- 목포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 92
-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 95
-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97
- 목포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 99
-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2
- 목포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104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용해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목포시 고시 제2017-43호(2017.3.9.), 목포시 고시 제2023-70호(2023.5.8.)로 결정(변경) 고시된 『용해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목 포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다음
2.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목포시 도시유산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도시유산과(☎061-270-34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정비구역 지정 조서(명칭, 위치, 면적) (변경)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용해동 용해2단지 주택재건축사업	목포시 용해동 713번지 일원	49,918	-	49,918	
변경	용해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목포시 용해동 713번지 일원	49,918	-	49,918	

2) 정비구역 지정사유서(변경)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지정 사유서
변경	-	목포시 용해동 713번지 일원	49,9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고시 제2017-43호(2017. 3. 9) 용해2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었으나,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2024.4.3. 목포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의 구조개선(6→7차로)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법, 시행시기(변경)

구 분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시 행 방 법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변경없음
시행 예정시기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5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8년 이내	
사업시행예정자	용해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용해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조합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9,918	-	49,918	100.0	
획 지	소 계	47,418	감)1,335	46,083	92.3	
	공동주택용지	43,331	감)1,335	41,996	84.1	공동주택용지
	존 치 부 지	4,087	-	4,087	8.2	용당교회, 대성교회
정비기반 시설용지 (도시계획시설)	소 계	2,500	증)1,335	3,835	7.7	
	어린이공원	2,500	-	2,500	5.0	
	도 로	-	증)1,335	1,335	2.7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제한 내용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32	용해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 사업	용해동 713 일원	-	49,918	-	49,918	목포시고시 제2017-43호 (2017.3.9.)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2	용해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역번호 변경 - 28 → 32	• 구역번호 중복에 따른 구역번호 변경 사항 반영

나.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소 계	49,918	-	49,918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49,918		49,918	100.0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조서 (변경)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206	10	국지 도로	200	대3-4 용해동 718-30도	소2-161 용해동 712대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87-80호 (1987.6.5.)	
변경	소로	1	206	10~12	국지 도로	136	대3-4 용해동 718-47대	소2-161 용해동 712대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87-80호 (1987.6.5.)	
신설	중로	2	117	15	국지 도로	64	대3-4 용해동 718-30도	소1-206 용해동 718-47대	일반 도로			
기정	대로	3	4	25~28	주간선 도로	2,950	3호광장 용당동 977-44도	산정동 구역계	일반 도로	대1-7	건설부고시 제1986-176호 (1986.4.29.)	
변경	대로	3	4	25~30	주간선 도로	2,950	3호광장 용당동 1118-1도	광장33호 연산동 614-180도	일반 도로	대1-6	건설부고시 제1986-176호 (1986.4.29.)	
기정	대로	3	8	25~28	보조 간선 도로	2,680	대3-4 용해동 940도	중2-3 죽교동 79-9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87-80호 (1987.6.5.)	
변경	대로	3	8	25~30	보조 간선 도로	2,680	대3-4 용해동 940도	중2-3 죽교동 79-9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87-80호 (1987.6.5.)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소로1-206	소로1-206	• 연장 변경 - L=200m→136m	• 용해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해 주출입구 도로(중로2-117호선) 확장 신설에 따른 일부 구간 연장 축소
-	중로2-117	• 신설 - L=64m - B=15m	• 용해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목포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주출입구 도로폭 확장 신설
대로3-4	대로3-4	• 폭원 변경 - B=25~28m → 25~30m	• 용해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목포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구)경찰서사거리 구간 교통 개선을 위한 도로 폭원 변경
대로3-8	대로3-8	• 폭원 변경 - B=25~28m → 25~30m	• 용해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목포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구)경찰서사거리 구간 교통 개선을 위한 도로 폭원 변경

라.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종류	위 치	면적(m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52	공원	어린이 공원	용해동 712 일원	2,500	-	2,500	목포시고시 제2017-43호 (2017.3.9.)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2	어린이공원	○ 시설번호 변경 - 125 → 152	• 시설번호 중복에 따른 시설번호 변경사항 반영 ※목포시 고시 제2021-91호(2021.6.24.)로 시설번호 변경

6)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
		세부시설		위 치	면적 (㎡)			
					기정	증감	변경	
A	49,918	A1	공동주택	용해동 713번지 일원	43,331	감)1,335	41,998	
B		B1	종교시설	용해동 747번지 일원	2,651		2,651	존치부지
C		C1	종교시설	용해동 715-1번지 일원	1,436		1,436	존치부지
D		D1	어린이공원	용해동 324-9번지 일원	2,500		2,500	기부채납

※도로는 별도로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7)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 건축선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A1 (공동주택)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70% 이하	
		높 이	기정	• 25층 이하
			변경	• 27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B1 (용당교회)	용 도	• 종교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	C1 (대성교회)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	D1 (어린이공원)	용 도	• 어린이공원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2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8)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적(m²)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합 계	2,500	증)1,335	3,835	7.7	
	어린이공원	2,500	-	2,500	5.0	
	도로	-	증)1,335	1,335	2.7	

2. 관계도면 : 정비구역(도시관리계획 결정도 포함) 및 지형도면 : 목포시 도시유산과비치. 끝.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목 포 시 장

○ 도로명주소 폐지 목록

연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지번 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1	목포시 율도금수동길 60-56	율도동 4-9	2025.6.16.	건물 멸실
2	목포시 율도금수동길 80-1	율도동 3-58	2025.6.16.	건물 멸실
3	목포시 율도금수동길 93	율도동 1-4	2025.6.16.	건물 멸실
4	목포시 율도금수동길 95	율도동 1-27	2025.6.16.	건물 멸실
5	목포시 율도길 17	율도동 445-1	2025.6.16.	건물 멸실
6	목포시 율도길 23-2	율도동 440	2025.6.16.	건물 멸실
7	목포시 율도안길 26-1	율도동 443-1	2025.6.16.	건물 멸실
8	목포시 달리길 4-1	달동 748-1	2025.6.16.	건물 멸실
9	목포시 달리길 135-4	달동 578-1	2025.6.16.	건물 멸실
10	목포시 달리길 145	달동 562-3	2025.6.16.	건물 멸실
11	목포시 달리길157번길 34	달동 484-1	2025.6.16.	건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313)에 문의 또는 목포시청 홈페이지(www.mokpo.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실제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해당 위치에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9 .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의안번호 제2024-2소위26-산12호)을 반영하여,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규정 신설

2. 주요 내용

- 수도사용 요금의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 명시 (안 제40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6. 입법예고

○ 기 간 : 2025. 6. 9. ~ 6. 30. (21일간)

7.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8301), 직접방문 등

※ 의견제출처 : [58724]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

목포트윈스타 5층 맑은물사업단 수도과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수도과(☎

061-270-3525, FAX 270-83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의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스티커 부착, 단수예고장 게시 때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0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하는 정수처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 (정수처분) ① · ② · ③(생 략) <u><신 설></u>	제40조(정수처분) ① · ② · ③(현행과 같음) <u>④ 제1항의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스티커부착, 단수예고장 게시 때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u>

관 계 법 령 발 체 서

관 계 법 령	내 용
수 도 법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 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 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총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16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895 호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영 제5조제1항에서 정한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
하여 답례품 공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1조제4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충당한다”를 “충당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기부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향사랑기부제 교육 및 홍보 활동

2.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개최

3. 고향사랑기부제 행사 및 이벤트 등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시상금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연하장 또는 감사서한 등 발송

2.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3. 시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시 누리집과 홍보매체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4.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5. 시정 시책이나 홍보 또는 고향사랑기금 사업에 관한 자료 등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기부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포상) 시장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기관·단체·개인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영 제5조제1항에서 정한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답례품 공급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기금으로 <u>충당한다</u> .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 법 제11조제5항----- ----- ----- ----- . --- ----- ----- ----. ② ----- ----- ----- ----- ----- ----- <u>충당할 수 있다</u> . 제24조(기부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향사랑기부제 교육 및 홍보 활동 2.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아이디어
<신 설>	

<신 설>

<신 설>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개최

3. 고향사랑기부제 행사 및 이벤트 등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시상금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연하장 또는 감사서한 등 발송
2.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3. 시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시 누리집과 홍보매체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4.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5. 시정 시책이나 홍보 또는 고향사랑 기금 사업에 관한 자료 등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기부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포상) 시장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기관·단체·개인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16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896 호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에 따라 목포시가
설립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이하“센터”)는 목포시
허사로33번길 48-4에 둔다.

제3조(기능)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상풍력 관련 대형 구조물의 제작·선조립·하역·물류관리 지원
2. 선박·항만·단지 모니터링·유지보수 등 통합관리를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

3.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4. 해상풍력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유치 및 지원
5. 해상풍력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의 향상 지원
6.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지원
7. 해상풍력 산업·기술의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추진
8.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시설·배후시설 등 지원
9. 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 지원
10.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선박의 도입, 건조 및 운용 지원
11. 센터 내 해상풍력 연관 기업 유치 활동
12. 센터의 공간 임대, 시설 및 장비 활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상풍력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상풍력 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전라남도 및 목포시 출연기관
 4.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또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위탁계약)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 기간

3. 위탁 대상 및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기관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센터 운영에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관리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2. 시설의 기능 및 목적에 위배되게 운영을 하였을 때
3. 위탁운영 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그 밖에 위탁받은 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기관은 목포시의 재산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위탁 해지 시까지의 사업비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정산 결과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의 민간 위탁의 타당성
2. 그 밖에 센터의 운영·관리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②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수입금의 관리) ① 관리 수탁자는 지원금 등 수입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 수탁자는 센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 등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기관은 다음 해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자체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 운영 및 기업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16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897 호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임성지구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명칭) 이 사업의 명칭은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제3조(사업 시행자) 이 사업의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조(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218번지 일원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에 따른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6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수익금 및 집행 잔액, 부과·징수된 과태료, 차입금,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

제7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으로 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보조 범위는 영 제81조에 따른다.

제8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이월) 회계의 예산 중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및 사업의 범위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12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16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898 호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나목 중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위한”을 “위한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교육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시장은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한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생 략) 나. <u>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u> 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 3. (생 략) ③ ~ ⑨ (생 략)	제1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u>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u> ----- ----- ----- -----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5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생 략) 2. <u>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u> 에 해당하는 사람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 ----- ----- ----- -----. 1. (현행과 같음) 2. <u>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u> ----- ----- ----- -----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26조(교육)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
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26조(교육) ① -----

----- 위한 다음 각 호의
-----.

1.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교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삭 제>

<삭 제>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다.

1.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
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⑤ 시장은 제1항-----
-----.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한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16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899 호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보할 수 있다”를 “통지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열람하게 할 수 있다”를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보고”를 “사후 통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④ “기금”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④ -----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

제11조(지정 절차) ① 시장은 금고 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은행법」 및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목포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에 한함)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15조(협력사업비등 처리방법)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연평균 협력사업비(복수 금고의 경우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지정 절차) ① -----

통지해야 한다.

② -----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협력사업비등 처리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본조
신설 2019. 7. 1.]

-----사후 통보-----
-----.

목포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16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00 호

목포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①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②지급신청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제4조(지급신청)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유족결정통지서 사본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 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서명한다.
2.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3. 시장은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생활보조비를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
2.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

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9조(지급현황 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에 따라 생활 보조비 지급내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 생활보조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025년 1월부터 조례 공포하는 달까지의 기간 중, 지급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이내	
희생자	성명		등록기준지						
	성별								
	구분	(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				결정일			
지급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희생자와의 관계		
	성별								
	주소	(☎)							
신청인	성명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성별								
	주소	(☎)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목포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사항	○ 주소 : ○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통지서

희 생 자	성 명		등록기준지			
	구 분	(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			결정일	
	성 별					
지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희생자와의 관계	
	주 소	(☎)				
	성 별					
신 청 인	성 명		지급대상자 와의 관계			
	주 소	(☎)				
	성 별					
비 대 상 결 정 사유						

상기인은 「목포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목포시장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

희 생 자	성 명		등록기준지			
	구 분	(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			결정일	
	성 별					
지 급 대상 자	성 명		생년월일		희생자와 의 관계	
	주 소	(☎)				
	성 별					
신 고 인	성 명		지급대상자 와의 관계			
	주 소	(☎)				
	성 별					
신고사유	(사망, 국외로 이주, 기타)					

위와 같이 「목포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 보조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illegible]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16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01 호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목포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계획(이하 “조성·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3. 시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 계획은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3(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만 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과 진단조사는 제5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라””를 ““위원회”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명”을 “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를 삭제한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

제5조의3제1항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을 삭제한다.

제5조의6을 제5조의8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5조의6)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하며, 제5조의6 및 제5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6(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및 기관·단체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의7(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과”를 “각 호와”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규칙”을 “별표 6”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이 병해충 방제 및”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단 중 “승인여부를 통보”를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승인여부를 통보”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비용부담금을 징수”를 “비용부담금 징수 또는 과태료를 부과”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을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을 “영 제11조 별표3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② 시장은 부담금을 내야하는 자가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가로수의 관리대장은 규칙에서
정하는”을 “가로수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로 한다.

①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 손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훼손 가로수 복구대장에 이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별표, 별지를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목포시 가로수·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
규칙을 폐지한다.

[별표 1]

도로별 식재 조성 기준(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 분	조성 기준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병렬다층식	현지 및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성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 10미터 미만	병렬식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 7미터 미만	다층식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단열단층식	

[별표 2]

도로별 가로수 조성 규격(제8조제4항 관련)

구 분	식재 규격	비 고
①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 10미터 미만	흉고직경 12cm이상 근원직경 10cm이상	.현지 여건 및 식재방법, 수종 등에 따라 식재 규격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교통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관목도 식재할 수 있음
②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 7미터 미만	흉고직경 10cm이상 근원직경 8cm이상	
③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흉고직경 8cm이상 근원직경 6cm이상	

[별표 3]

가로수 관리 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제17조 관련)

구 분	시설물 규격 및 종류	비 고
①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 10미터 미만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보호틀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달리 할 수 있으며, 보호덮개도 입지 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등 다양하게 처리 가능
②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 7미터 미만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③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별표 4]

가로수 주요충해 및 방제법(제14조 및 제15조 관련)

수 병	가해수종	가해구분	방 제 법	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	벗 나 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	잎	○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 디프제 등 살포	○ 1화기: 6월 상순 ○ 2화기: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현 사 시 포플러류	가지	○ 피해가지 절단 소각 ○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등 살포	○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잎	○ 피해가지 절단 소각 ○ 메프유제, 디프제 등 살포	○ 1화기: 5월 초중순 ○ 2화기: 9월초~중순
텐트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벗 나 무 느티나무	잎	○ 알덩어리 채취 소각 ○ 디프제 등 살포	○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	버즘나무	잎	○ 할로스린 1%유제, 에토판프록스 10%수화제 수관살포 ○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	○ 수관살포: 5월 하순 ~ 6월 초순 ○ 나무주사: 6 ~ 7월
짚시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벗 나 무	잎	○ 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 디프제 등 살포	○ 4월 중·하순
응애류	벗 나 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	잎 가지	○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등)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	벗 나 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	잎 가지	○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 발생초기(수시)
각지벌레류	벗 나 무 소 나 무 포플러류 등	잎 가지	○ 메치온 유제, 이미다크로프리드 액제 등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 발생초기(수시)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 ~ 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별표 5]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21조 및 제22조 관련)

피 해 발생의 경 우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수목의 가치를 상실하였을 경우(수관의 2β 이상 훼손)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 공사 설계비 전액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수관의 2β 이하, 1β 이상 훼손)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 공사 설계비의 30% 이상 70% 이하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수관의 1β 이하 훼손)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 공사 설계비의 30% 이하
피 해 이외의 원 인 발생의 경 우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원인자가 세입세출외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도급 공사 설계비 예치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 발생의 경우로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 공사 설계비 부담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원인자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도급 공사 설계비 부담하고 제거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원인자가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 공사 설계비 + 제거비 부담
○ 도급 공사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 (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 목 비 : 물가정보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 공사 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 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 하자책임 담보기간 : 2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조정식재)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표 6]

가지치기·옹서심기 대상 및 방법 (제13조 관련)

1. 가지치기

1. 대 상	가.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할 대상 1) 병충해 피해 가지 2) 도장지 또는 쇠약지 3) 마른가지(고사지) 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5) 뿌리부분이나 지하고 내의 줄기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나. 지하부(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 다. 가지의 과다로 수형의 조정이 필요할 때 라. 도로표지,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릴 경우 마. 가지가 전송·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바. 개화·결실을 촉진하고자 할 때
2. 시기 및 횟수	가. 낙엽 후부터 이른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록활엽수는 절단면 동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지 않음 나. 강도의 가지치기는 수년에 나누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다. 기타 주의사항 1) 전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꽃눈(화아)이 진 후 2) 당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봄 3)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봄 발아 수종 : 이른 봄 가지치기 금지 4) 새싹이 나온 후 가지치기 : 사철나무, 버드나무처럼 맹아가 강한 수종
3. 방 법	가. 침엽수는 눈 바로 윗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나. 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다.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감안, 가지기부 또는 중간부 위에서 가지치기 라. 가지기부에서 자를 때에는 지용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서 가지치기 마. 가지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바.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사.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일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찢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아. 수종별 기본수형을 유지하여 가지치기 1) 원추형 : 은행나무, 느티나무, 히말라야시다 등 3) 원정형 : 버즘나무, 목백합 등 3) 평정형 :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
4. 절단면의 처리	절단면이 넓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포제, 코울타르 등으로 도포

2. 옮겨심기

1. 대 상	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가 필요한 경우(가지치기만으로 효과가 미흡할 경우) 나. 도로확장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다. 도로점사용 허가를 득한 경우 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방 법	가. 굴 취 1) 수목 굴취는 인력굴취를 원칙으로 하며 기계 굴취해야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다. 2)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 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엽을 전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4)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5) 굴취구덩이는 굴취 후 즉시 산토로 메워 지형과 일치되도록 정리한다. 땅다지기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운 반 1) 운반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2)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다. 수목식재 1). 식재구덩이 굴착 가)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나)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1)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2)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라) 식재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를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마)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한다. 바)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사)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잔토처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방 법

2) 식 재

- 가)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한다.
- 나)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 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 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라)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잔여 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 마)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 바)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한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피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 사) 수목얹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 아)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3) 지주목세우기

- 가)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 나) 삼각형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 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관 수 : 식재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5) 모양잡기 : 수목 식재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가)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 나)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 다)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 라)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옮겨심기전의 수형을 잘 살피서 다듬는다.

■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가지치기(옹저심기) 승인신청서

가로수 가지치기(옹저심기) 승인신청서 (제21조제1항 관련)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가지치기(옹저심기) 내역		소 재 지				
		노 선 명	구 간	수 종	규 격	수 량
			시점: 종점:			
사 유						
작업방법						
가지치기 유형 및 주의사항						
작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						

■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가지치기(옹거심기) 승인서

가로수 가지치기(옹거심기) 승인서 (제21조제3항 관련)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가지치기(옹거심기) 내역		소재지				
		노선명	구 간	수 종	규 격	수 량
			시점: 종점:			
사 유						
작업방법						
가지치기 유형 및 주의사항						
작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승인조건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훼손 가로수 복구대장 (제26조제1항 관련)

[illegible]

■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가로수 관리대장 (제26조제3항 관련)

도 로 노선명					구 간	시 점					
						종 점					
도 로 종 류	종 류				도로폭	차 도					
	좌 우 측					좌측보도					
	연장거리					우측보도					
가 로 수 조 성 현 황											
최초조성						준공일자					
사 업 비						시 공 자					
수종	식재 본수 (본)	평균 수고 (m)	흉고 직경 (cm)	근원 직경 (cm)	수관 폭 (m)	수령 (년)	식재 위치	식재 거리 (m)	식재 간격 (m)	식재 유형	보호틀 유 형
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											
수종	일자	변동내용			관 리 내 용						
		증감 수량	잔존 본수	증감 사유	계	가지 치기	방제	비료 주기	토양 개량	외과 수술	기타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시설종류	일자	잔존수량	설치수량	제거수량	기타		비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2(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목포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계획(이하 “조성·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2.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u> <u>3. 시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 계획은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u>
<u><신 설></u>	<u>제4조의3(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u> <u>①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u>

제5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 위원회) ①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중 시장이

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만 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과 진단조사는 제5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 위원회) ① -----

----- “위원회” 라 -----.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

<삭 제>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요청한 사항

3.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도시공원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략)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3(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는 연임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신설>

3. (현행과 같음)

② -----
7명 -----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 -----

-----.

제5조의3(위원의 임기) ① -----
----- 하되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6(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및 기관·단체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의7(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제5조의6(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시숲 등 조성·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 (바뀌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뀌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 5. (생 략)

② (생 략)

제13조 (가지치기·옮겨심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 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 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 공간의 확보, 전기·통신시설물의 안전, 타공사 또는 타행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옮겨심기를 할 경우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치기·이식을 실시한다.

내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8(간사) -----

----- 업무팀장 -----
-----.

제12조 (바뀌심기 및 메워심기) ① -----
-- 각 호와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가지치기·옮겨심기) ① -----
-----.

별표 6-----
-----.

②·③ (생 략)

제14조 (병해충의 방제)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호와 같이 병해충 방제 및 별표 4의 가로수 주요 충해 방제법에 따라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제21조 (승인절차)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도시숲 등 수목을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도시숲 등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비용부담) ① 시장은 도시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 (병해충의 방제) -----

----별표 4-----

-----.

1. ~ 6. (현행과 같음)

제21조 (승인절차) ① 법 제12조제3항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이내에 원인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승인여부를 통보

-----.

제22조 (비용부담) ① -----

숲 등 수목과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 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23조 (부담금의 징수) ① (생 략)
<신 설>

②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6조 (관리대장) <신 설>

① (생 략)

② 가로수의 관리대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비용부담금 징수 또는 과태료를 부과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 (부담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부담금을 내야하는 자가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 영 제11조 별표3 규정에 의하여
-----.

제26조 (관리대장) ①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 손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훼손 가로수 복구대장에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가로수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

-----.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16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02 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으로 한다.

별표 4의 출산의 일수란 중 “10”을 “20”으로, “15일”을 “25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24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u>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u>)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u>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u>)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u>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u>)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 ----- <u>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u>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⑳ (생 략)	③ ~ ㉔ (현행과 같음)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u>10</u>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u>15일</u>)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u>20</u>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u>25일</u>)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16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03 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령한 여비 상당액”을 “수령액”으로, “상당액으로 한다”를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여비 부담 수령 시 가산징수)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u>상당액</u> 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u>상당액</u> <u>으로 한다.</u>	제4조(여비 부담 수령 시 가산징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수령액</u> ----- ----- <u>금액</u> <u>으로 한다.</u>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16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04 호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1명을 포함하여 7명”을 “1명,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무국장으로 한다”를 “사무국장,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
하며, 외부위원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취소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위원은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적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목포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제9조(목포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 1명,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8명 -----.
③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으로 하며 위원은 목포시의회 상임 위원회 위원장 3명과 목포시의회 사무 국장으로 한다.	③ ----- ----- ----- -----사무 국장,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취소

<신 설>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위원은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적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후원명칭 사용승인 내역 통보서					
신청기관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이메일:)	
	대표자		생년월일		
	담당자		생년월일		
행사명					
행사목적					
행사내용					
행사주최					
행사주관					
행사장소					
참석대상					
행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후원명칭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참석예정인원					
승인조건					
기타 참고사항					

목포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16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05 호

목포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임기)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 사건 종료 때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이 제4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고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고문에 대하여 제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기) <u>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u> <u><신 설></u>	제5조(임기) ① <u>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② <u>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 사건 종료 때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u> ③ <u>고문이 제4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u>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16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06 호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목포시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당해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과 3명 이하의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목포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⑥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목포시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목포시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

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목포시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목포시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목포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8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	1.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		
	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		
	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 ‘아니오’ 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 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명	계	체재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5. 출장 주요정보 요약

공무국외출장 주요정보요약		
출장명		
출장자 명단	의원	
	직원	
	기타	
출장기간		
방문국가		
공식방문기관 (접촉자)		
여행경비	체재비	
	준비금	
	항공료	
	차량임차료	
	통역비	
	물품구입	
	기타비용	
	총 계	

비용 상세정보

총 여행경비 (A+B+C +D+E+F+G)							
체재비 (A=a+b+c)							
적용환율							
구분(금액)	급지	호수	상한	일수	인원	산출금액	실지금액
일비 (a)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O / X]						
식비 (b)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O / X]						
숙박비 (c)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O / X]						
준비금 (B)	지급사유:				금액:		
항공료 (C)	이용구간:				금액:		
차량임차료 (D)	이용일수: 이용차량:				금액:		
통역비 (E)	이용내역:				금액:		
기념품 등 물품구입 (F)	구입목적: 물 품 명:				금액:		
기타비용 (G)	지급사유:				금액: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 I.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
- II.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 III.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명	비고

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심사위원회에서 기재

3. 첨부자료

○ 출장계획서 및 회의록

※ 부결되었다가 재의결된 경우 부결된 심사위의 회의록도 포함

○ 실제 출장 수행 출장 주요정보 요약(별지 제1호 서식의 5.활용)

※ 출장자 취소, 현지 일정변경 등에 따른 출장, 비용 변동을 반영

○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 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

※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합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개별 의원별 보고서를 포함

목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16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07 호

목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목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 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목포시의회
3. 목포시의료원 및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등에 관한 사항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우선구매 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다.

제8조(홍보 지원)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구매 협조요청) 시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공공단체, 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구매실적의 공표 등)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16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08 호

목포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목포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동반 관광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인, 관광업체,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시설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제3조의4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관광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 시장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를 선정해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6조(세부사업)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2.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
4.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지원
5.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
6.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

7. 반려동물 용품 자판기 설치

8. 반려동물 동반여행 지원 또는 편의 관련 시설 신규 조성·정비·확충

9. 반려동물 동반여행 안전수칙 등 교육프로그램 제공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기관 등을 선정해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16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09 호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방송, 영화 등의 제작지원
7. 국내·외 홍보를 위한 팸투어 지원
8. 드라마 촬영지 등 활용방안 마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시책과 사업)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상품의 개발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6. (생략)	제3조(시책과 사업) ----- ----- ----- -----. 1. ~ 5. (현행과 같음) <u>6. 방송, 영화 등의 제작지원</u> <u>7. 국내·외 홍보를 위한 팸투어 지원</u> <u>8. 드라마 촬영지 등 활용방안 마련</u> 9. (현행 제6호와 같음)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16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10 호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맛집 홍보를 위한 이벤트 개최 지원
6. 맛집 QR코드 및 애플리케이션 활성화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맛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맛집에 대한 지원)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 맛집 홍보를 위한 이벤트 개최 지원</u>
<u><신 설></u>	<u>6. 맛집 QR코드 및 애플리케이션 활성화</u>
<u>5.</u> (생 략)	<u>7.</u> (현행 제5호와 같음)

목포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16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11 호

목포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이란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란 「5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목포시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예술인 및 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6조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사업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목포시청년정책위원회와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
3.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기획 및 활동 지원 사업
6. 청년 문화예술 기반시설 구축 및 공간 조성 사업
7. 청년 문화예술 거점 및 커뮤니티 조성 사업
8.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①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예술인 청년단체 기획·창작 공간 및 문화공간 조성 지원

2. 청년 예술인 청년단체 기획·창작·홍보 활동 재정 지원
3. 청년 예술인 및 청년단체 기획·창작 활동 컨설팅 및 점검 지원
4. 청년 예술인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6. 청년 문화기획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
7.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8. 청년 예술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유관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인 및 문화예술 실태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 제6조의 재정지원 및 제8조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16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12 호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호마목”을 “제6조제1항제1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2조까지의”를 “법 제42조까지에”로, “70퍼세트”를 “70퍼센트”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민간”을 “제3항 3호 민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된다”를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1.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실과소장
2. 목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16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규칙 제 1891 호

목포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3조제10항”을 “제43조제9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설치 및 기능”을 “설치”로 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3항 중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발주기관의 공무원을 3명까지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상 공무원”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각 항의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을 “발주부서의 장은”으로 한다.

제6조의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을 “발주부서의 장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3분의 2”를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의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을 “발주부서의 장은”으로 하며, 제5항의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를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시장”을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며, 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 중 “다만, 공무원인 위원인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기존 별지 제3호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안각서(제7조제5항 관련)

○ 사 업 명 :

○ 발주부서 :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0항에 따라 목포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43조제9항----- ----- ----- -----.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비상설로 한다. ② 위원회는 물품·용역계약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물품·용역의 경우 기술·지식 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관계 등 2. 공사의 경우 정책 이해도, 마스터플랜 반영도, 지역경관과의 조화성, 설계의 우수성·창의성 등	제2조(설치) ① ----- ----- ----- ----- ----- -----. ② <삭 제>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발주기관의 공무원을 3명까지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u> 1. <u>3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상 공무원</u> 2. ~ 7.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삭 제> 1. <u>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u> 2. ~ 7. (현행과 같음)
제4조 (구성방법) ① <u>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위원을 선정하고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u> ② <u>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u>	제4조 (구성방법) ① <u>발주부서의 장은</u> ----- ----- ----- ----- ----- ----- ----- ----- ----- --. ② <u>발주부서의 장은</u> ----- ----- ----- -----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회 구성 인원수에 해당하는 위원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u>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u> 자는 위원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 ----- ----- ----- ----- ----- --. ③ <u>발주부서의 장은</u> ----- ----- ----- -----.
제6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u>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6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u>발주부서의 장은</u>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u>3분의 2</u>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u>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u>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 ----- <u>7명</u> ----- -----. ② <u>발주부서의 장은</u>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u>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u> 자는 <u>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u>을 선정할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u>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u>	⑤ 발주부서의 장은 ----- ----- ----- ---<u>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u> <u>따라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u>
제8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u>안전</u> <u>행정부장관</u>이 정한「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 안에서 <u>시장</u>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u>별지 제3호서식</u>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 (평가점수 산정) ① ----- <u>행정</u> <u>안전부장관</u> ----- ----- ---- <u>발주부서의 장</u> -----. ② ----- <u>별지 제4호서식</u>----- ----- ----- ----- ----- ----- ----- -----.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u>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9조 (수당 등) ----- ----- ----- ----- ----- -----<u>≤삭 제></u>